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

-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78호('99.10.11)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조사"라 함은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의 채취·검정, 원산지 판정 및 물품·서류에 대한 각종 조사를 말한다.
2. "시료검정"이라 함은 조사기관이 채취한 시료를 검정기관이 관능적,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매업자"라 함은 원산지표시대상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등을 말한다.
4. "판매장소"라 함은 소매상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하며, 도매상의 경우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점포와 견본품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를 말하고, 수

집상의 경우 수집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진열한 장소를 말한다.

5.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또는 발색제 등을 말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국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①영 제24조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국산수산물의 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되어 유통되는 수산물의 경우
가. 표시방법 : 포장지 직접인쇄. 다만, 랩포장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커 또는 전자저울에 의한 바코드라벨 부착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또는 내찰에 의할 수 있다.
나. 표시위치 : 원칙적으로 포장전면에

표시

- 다. 활자의 크기 및 색깔: 활자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으며, 활자의 색깔은 포장지 바탕색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2. 산물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한글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문 또는 영문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국명", "제조국:국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수산물의 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유통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준용한다.
3.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영제24조 및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수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수산물 1개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수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함량순위에 따라 상위 2개의 원료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료가 혼합된 가공품에 대하여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량순위에 따라 상위 2개의 원료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한다.
2.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원료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가지 원료

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위 2개의 원료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대상이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 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산물가공품 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방법
 - 가. 국산원료로 가공하였을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지의 시·군명을 표시하거나 원양어획물의 경우 "국산(원양산)"으로 추가표시할 수 있다.
 - 나. 수입원료로 가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특정원료의 원산지 또는 원료의 배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동안 3회이상 변경된 경우
 - (2) 원료구입선 및 배합비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원산지에 따라 원료의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 다. 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감범위가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등사, 날인, 주조, 식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표시위치: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중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포장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3. 활자의 크기: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활자의 색깔: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와 같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깔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표시의 간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제5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등록품은 그 표시기준에 의한 "산지"표시를 원산지표시로 본다.

제8조(원산지표시 조사계획수립 등)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원산지표시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공무원중에서 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조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농수산물유통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원산지표시조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9조(시판품조사) ①조사원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물품,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수산물의 외관적 특성·형태·맛·냄새 등의 확인, 시료의 채취·검정, 수입업자와 가공업자간의 원료수불내역 또는 수입업자·가공업자와 판매업자간의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

2.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여부
3. 원산지의 허위 또는 위장표시여부
4. 원산지표시 대상수산물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원산지표시 대상수산물의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

③조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조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을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현장에 입회할 수 없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피조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때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내용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기간은 발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로 하며, 종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10조(시료의 채취) ①조사원은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수산물의 특성, 포장상태 및 적재규모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이등분하여 조사원과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의 연명으로 봉인한 후 1점은 수검자 보관용으로, 1점은 검정의뢰용 시료로 한다.

②조사원은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조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시료의 채취에 필요한 비용은 조사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1조(시료의 검정) ①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시료의 검정기관은 국립수산물진흥원,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 포함)로 한다.

②조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료검정의뢰서에 의하여 시료검정기관에 시료의 검정을 의뢰한다.

③시료검정기관은 피조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료검정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료접수 및 분석대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료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조사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기관은 5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30조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위반사항을 조사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조사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확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농수산물유

통공사사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 ①조사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조사업무담당기관의 장은 소속 조사원의 조사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표시조사일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업소처분대장에 수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결과 보고) 조사업무담당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실적을 분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분기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실시요령) ①조사업무담당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3조관련)

1. 국산수산물

○ 적용대상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신선·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및 새우젓

		대 상 품 목
어	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펍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쾡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통이류, 떡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류,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승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대 상 품 목	
갑 각 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패 류	가리비, 개량조개, 고등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연 체 동 물 류	갑오지어류, 꿀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주꾸미, 기타 연체동물
해 조 류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툯, 파래, 기타해조류
수 생 동 물 류	미더덕, 우렁쟁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 제외대상 : 활어, 새우젓을 제외한 젓갈류, 비식용수산물

2. 수산물가공품

대 상 품 목	
통·병조림	고등어, 전갱이, 삼치, 정어리, 꽁치, 다랭이, 연어 또는 패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
어육제품	어묵류, 어육소지지류
단순가공식품	[조미어포류] 조미오징어류, 조미취치포류, 조미학꽁치포 [조미김] 맛김, 구운김

3.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구 분	분 류 내 용	HS(국제상품분류) 4단위기준 대상품목 분류번호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8
제3류	어류(魚類), 갑각류, 연체(軟體)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제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7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식물	1212
제13류	락(식물성 액즙)·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2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4, 1516, 1521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1603, 1604, 1605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2104, 2106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별표 2]

국산수산물 원산지표시 활자크기(제4조 관련)

원산지표시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저울에 의한 바코드라벨 부착시 원산지표시 활자크기는 포장전면 크기와 관계없이 13Point이상으로 한다.

포장전면크기	활자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m ² 이상	30point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m ² 이상	20point이상
10cm이상×5cm이상 또는 50m ² 이상	12point이상
10cm이상×5cm이상 또는 50m ² 이상	8point이상

[별표 3]

산물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제4조 관련)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국산수산물과 수입산수산물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표 시 방 법	규 격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15cm×세로10cm이상
"	푼말표시	가로15cm 세로10cm 높이10cm이상
산물거대	"	"
진열판매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7cm×세로5cm이상

[별표 4]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제5조 관련)

표 시 요 령
<p>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고의적인 행위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본다.

[별표 5]

포상금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과태료부과금액 또는 적발된 유통물량	포상금지급기준(건당)	
		민 간 인	공 무 원
고 발	20만원 미만	50,000	30,000
	2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000	50,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0,000	10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0,000	15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00,000	250,000
	1,000만원 이상	1,000,000	500,000
과 태 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0,000	3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0	50,000
	500만원 이상	200,000	100,000